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4. 16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. 4. 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4. 4. 3.

다. 상정일자 : 제26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4. 4. 16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

가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 관련 규정 개정 및 서울시와 우리 구의 보훈예우수당 병급 제한 규정 삭제 등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시기 조정 및 '지역출신' 용어 삭제 (안 제5조5항)

○ 마포구 보훈수당 지급자격 완화(안 제8조1항 및 제10조1항)

○ 서울시 보훈수당·마포구 보훈수당 간 병급제한규정 삭제 (안 제10조2항)

3. 검토보고 (장홍용 전문위원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 관련 규정 개정 및 서울시와 우리 구의 보훈예우수당 병급 제한 규정 삭제 등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5조제5호 중 “호국·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”을 “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관련 행사 시”로 포상시기를 조정하고,
- 안 제8조제1항 중 “3개월”을 “1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여 서울시와 마포구 보훈수당 간 병급제한 규정을 삭제하며,
- 제10조제1항 중 “3개월”을 “1개월”로 하여 지급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보훈법에 위배됨이 없 으며 보훈예우수당의 병급제한을 삭제하고 지급자격을 완화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,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복지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

참 고 자 료

1. 관련법령

국가보훈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・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・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2. 마포구 보훈단체 현황

연번	단 체 명	회 장	회원수	비 고
1	**대한민국상이군경회**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윤석만	477명	신수로 58 마포구 보훈회관
2	대한민국 **전몰군경유족회**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최길순	208명	
3	대한민국 **전몰군경미망인회**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하복덕	275명	
4	대한민국 **무공수훈자회**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이석한	249명	
5	**6・25참전유공자회**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김우춘	435명	
6	**광복회**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이중성	73명	
7	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고용식	245명	
8	대한민국 **월남전참전자회**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오경만	254명	
9	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전영복	12명	
계	9개 단체		2,228명	

3. 서울시 구별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

(단위: 만원)

연 번	구 별	23년 지급액	24년 지급액 (예정)
1	종로구	5	5
2	중구	7	7
3	용산구	5	7
4	성동구	5	5
5	광진구	5	7
6	동대문구	5	6
7	중랑구	5	5
8	성북구	5	5
9	강북구	5	5
10	도봉구	5	6
11	노원구	5	5
12	은평구	5	6
13	서대문구	5	5
14	**마포구**	**5**	**6**
15	양천구	5	5
16	강서구	5	5
17	구로구	5	6
18	금천구	5	6
19	영등포구	6	6
20	동작구	5	6
21	관악구	5	6
22	서초구	7	9
23	강남구	8	8
24	송파구	10	10
25	강동구	5	6

4. 서울시·마포구 보훈수당 지급기준

□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기준

구 분	참전명예수당	보훈명예수당	보훈예우수당	생활보조수당	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
지급 대상	6.25, 월남전 참전유공자	생존 애국지사	‣ 4.19혁명유공자 ‣ 5.18민주화운동유공자 ‣ 특수임무유공자 ‣ 전상·공상군경 ‣ 공상공무원	국가유공자*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	독립유공자 (손)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%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
대상 인원	37,500명	2명	3,300명	4,100명	4,000명
지원 금액	월15만원	월100만원	월10만원	월20만원	월20만원
연령 기준	만 65세이상	-	만 65세이상	만 65세이상	-
주민 등록 기준	1개월	-	1개월	1개월	-
기타 기준	-	-	-	-	*아래요건 모두 충족 ①국가보훈부 독립유공 생활지원금 수급자 ②기준중위소득70%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

□ 마포구 보훈수당 지급기준

구 분	참전명예수당	보훈명예수당
지급 대상	·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 보훈 대상자	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보훈대상자 ·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해당 보훈대상자 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 보훈대상자 ·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해당 보훈대상자 ·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 보훈대상자
대상 인원	1,279명	1,807명
지원 금액	월 6만원	
연령 기준	연령기준 없음	
주민등록 기준	마포구 전입 3개월 이상 (2024. 3월 현재)	